제 505 호

1975.6.1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957호 서울특별시립남부부녀보호지도소및동부여자기술원 설치조례 …… 3
◎ 규 칙
제1475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 4
제1476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직제중개정규칙 …… 5
제1477호 서울특별시구·출장소사무분장규정중개정규칙 …… 5
제1478호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 6
제1479호 서울특별시립남부부녀보호지도소및동부여자기술원직제 …… 7
◎ 훈 령
제 408호 서울특별시구관인관수규정개정규정 …… 7
제 409호 서울특별시구·출장소관인관수및취급규정중개정규정 … 8
◎ 고 시
제 84호 하천점용(휘수정)허가 …… 9
제 85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 9
제 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저적일부변경 …… 10
제 87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 1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28호 성동구청장공인개각공고 …… 11
제 129호 1975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의기업합병,
전문화제열화,시설개체,수출산업화,토산품육성지원
자금집행요령중개정 …… 12
제 131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
운용요강중개정 …… 13
제 132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
집행요령중개정 …… 13
제 133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사업자금
운용요강중개정 …… 13
제 135호 도시계획사업(학교)완료공고 …… 14
제 136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대체지정공고 …… 14
제 137호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정지(잠정)공고 …… 15
제 139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 15
◎ 사 령 …… 16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남부부녀보호지도소 및 동부여자기술원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57 호

서울특별시립남부부녀보호지도소 및 동부여자기술원설치조례

제 1 조(목적) 무의 무탁한 부녀 기타 요보호 여성의 수용보호와 자립 생생지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남부부녀보호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립동부여자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 2 조(위치) 지도소와 기술원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공고한다.

제 3 조(직무) ①지도소 및 기술원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불우여성의 수용보호
2. 수용자의 건강관리
3. 수용자의 기술교육
4. 수용자의 교양지도
5. 수용자의 취업계획 및 직업알선
6. 기타 수용자의 자립을위한 사항

②지도소와 기술원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공무원) ①지도소에 소장을 두고 기술원에 원장을 두며 소장과 원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과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지도소와 기술원의 업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소장과 원장외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조(위탁진료비등) 소장과 원장은 재소 또는 재원자에 대한 치료 기관에의 위탁진료비 및 퇴소 또는 퇴원자에 대한 퇴소비 또는 퇴원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 6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제 893 호(74.11.14)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지도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75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중 제1호 다목, 제2호 제3호 및 제4호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중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1. 감사1계

다. 재무국, 환경국, 산업국, 녹지국 관광운수국, 수도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징계제청

2. 감사2계

가. 기획관리관, 내무국, 도시계획국 및 공무원교육원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징계제청

나. 구 및 출장소중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관악구, 은평출장소, 양서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징계 제청

3. 감사3계

가. 비상계획관, 주택국, 서울운동장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징계제청

나. 전호 나목 이외의 구 및 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징계제청

4. 감사4계

라. 문화공보실, 감사관, 보건사회국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징계제청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목욕, 이용, 미용 및 숙박요금과 우동, 짜장면값 및 다방의 다류값등 법정요금의 조정 단속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액상폐기물 정화조 설치사고 및 준공검사(본청건축허가분에 한한다)

제34조 제2항 제2호중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 제2항 제3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전기기술자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타. 전화 사업

제62조 제2항 제2호중 마목을 삭제하고,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82조 제1항중 "배수 계장과 누수방지 계장은 지방토목 기좌로, 급수장치계장은 지방기계기좌로 보한다"를 "계장은 지방토목 기좌로 보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보건소직제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6월 12일

◎ 서울특별시 규칙제 1476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 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보건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2호중 바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출장소사무분장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6월 12일

◎ 서울특별시 규칙제 1477 호

서울특별시구·출장소사무분장규정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구·출장소사무분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중 다목 및 마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액상 폐기물 정화조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제2항 제2호중 가목내지 마목을 다목내지 사목으로 하고,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3호중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나. 환경순찰확인

다. 액상폐기물정화조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제2항 제2호중 가목내지 마목을 다목내지 사목으로 하고,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나. 환경순찰확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78 호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계"를 각각 "기획감사계"로 하고, 동조 제2항 제4호중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2항 제2호중 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구관장 부녀복지관계사업소의 지도감독

제10조 제2항중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액상폐기물 정화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2항 제3호중 가목내지 마목을 다목내지 사목으로 하고,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나. 환경순찰확인

제12조 제3항 제2의2중 차목, 제3호중 사목및 제4호중 아목을 각각 삭제하고 제3호중 아목을 사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 남부부녀보호지도소및 동부여자기술원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79 호

서울특별시립남부부녀보호
지도소및동부여자기술원직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남부부녀보호지도소(이하"지도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립동부여자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장) ①지도소와 기술원에 각각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 주사로 보한다.

②사무장은 소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장 또는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분장사무) 지도소 및 기술원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도소 : 정신적 육체적 결함으로 생활대책 없이 부랑하는 부녀의 수용보호, 건강관리, 능력배양에 필요한 단순작업 및 생활교육의 기술원 수용대상 및 가출부녀자등에 대한 일시 보호 업무의 관리

2. 기술원 : 윤락여성 및 윤락의 우려가 있는 부녀의 수용보호, 건강관리, 교양생활지도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교육의 실시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1411호(74. 11. 20) 서울특별시 부녀보호지도소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구관인관수규정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년 6월12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서울특별시훈령제 408 호

서울특별시 구
관인관수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구 관인관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직인비치) ①관인규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직인(이하 "관인"이라 한다)은 시민봉사실에 1개 비치한다.

②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따로이 호적병사용을 시민봉사실에 수도업무용을 수도1과에 출장소용(출장소가 설치된 구에 한함)을 출장소 시민과에 각 1개씩 비치할 수 있다.

제2조(관인관수) 관인은 구 시민봉사실장, 수도1과장 및 구, 출장소 시민과장(이하 "관인관수자"라 한다) 이 각각 자기 사무용을 관수한다.

제3조(관인날인) 관인의 압날을 요할 때에는 원의서와 시행문서를 대조 통제한 다음 관인관수자가 이를 압날 하여야 한다.

제4조(날인구분) 구청장의 관인은 모든 일반문서와 민원서류 전반에 날인한다. 다만, 구의 호적병사용 관인은 호적 및 병사에 관한 민원서류에 한하여, 수도업무용은 수도사업에 관한 문서에 한하여 날인할 수 있으며, 구, 출장소의 출장소용 관인은 출장소에서 구청장 명의로 처리되는 민원서류 전반에 날인한다.

제5조(관인관수장) 관인은 집무시간 후에는 관인관수자가 관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수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출장소관인관수및 취급규정중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서울특별시훈령제 409 호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관인관수 및 취급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관인관수 및 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출장소장"을 "출장소 시민과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관인날인) 관인의 압날을 요할 때에는 시민과장이 원의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확인한 다음에 압날하여야 한다.

제3조중 "출장소장"을 "출장소시민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84 호

하천 점용 (취수정) 허가

하천 점용(취수정)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하천법 제25조및 동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 6. 9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년월일　75. 6. 9
2. 허가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22-7 앞
3. 공사의 종류 : 취수정 1 기
   급수관 200 ㎜/㎜ L = 90 미터
4. 점용면적 : 91 ㎡
5. 점용목적 : 공업 용수 확보
6. 점용기간 : 허가일로 부터 3개월
7. 공사의 착수, 준공 예정 년월일
   착수 허가일로부터 10일내
   준공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수허가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봉동 30-1
   삼양식품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중 윤.

◎서울특별시고시제 85 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5호(68. 6. 14)로 실시계획 인가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제13조, 동법제25조및 동법제26조와 건설부 고시 제434호(73. 11. 5)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6. 1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 : 시내성북구 성북동 산7의7 외1 필
2. 사업의 종류 :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3. 사업 면적 : 24,914 평
4.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시내 중구 장충동 1가 119 이상순
5. 시설(가로)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1	6m	660m	성북동 145-133	성북동 145-127	도로폭원 및 위치변경
변경	〃	3	1	6	629	〃	〃	
기정	소로	4	2	4	140	성북동 1-135	성북동 145-129	도로폭원 및 위치변경
변경	〃	3	2	6	80	〃	〃	

※ 범칭 : 도면표시와 같음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8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일부변경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지적일부 변경하여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 4. 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가. 로선변경조서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6.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2	28	30m	8,500m	청담동광로14	서초동광로 19	
변경	〃	2	〃	〃		〃	〃	일부구간 위치변경
기정	중로	3	52	12	1,380〃	신영동 (대 3-58)	구기동	
변경	〃	3	〃	〃	1,390〃	〃	〃	일부 위치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및 관할구청 (출장소) 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87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75호 (75.5.23)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을 도시계획법제24조및 건설부고시 제 123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영동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6.1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성동구 서초동	산 152 - 6	임야	6,024 평	상문학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학교시설 사업 (상문중, 고등학교)

3. 면적 또는 규모 : 2,004 평

4. 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초동 1170-3 성문학원 이사장 상 현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1975.5.6-75.12.15

6. 위치및계획평면도 : 별첨(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영동출장소에 보관.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28 호

성동구청장공인개각공고

다음과 같이 당시 산하 성동구 청장의 공인을 폐기하고 개각사용 토록 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5. 6. 5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인명 : 1. 성동구청장직인 및 계인

2. 성동구청장직인 (호적병사용) 및 계인

2. 사용일시 : 1975. 6. 5

3. 공인의 인영

	폐기인영		개각인영	
성동구청장인 계인				
성동구청장인(호적병사용) 계인				

◎서울특별시공고제 129 호

1975 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의 기업합병, 전문화계열화, 시설개체 수출산업화, 토산품육성 지원자금 집 행 요 령 중 개 정

1975 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의 기업합병, 전문화계열화, 시설개체, 수출산업화, 토산품육성 자금집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1975. 6. .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의 기업합병 전문화계열화, 시설개체, 수출산업화 토산품육성 지원자금 집행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중 시설개체, 수출산업화

전문화 재열화, 도산품육성자금이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설: 년 12%

별표 1 제 7 호중 시설개체, 수출산업화, 전문화 재열화, 기업합병 자금지원의 대상업종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상공부장관이 정한 유형구분에 의한 제 3 유형에 분류된 품목을 제외한 기타 제품(제 1 유형및 제 2 유형포함)의 생산자.

◎서울특별시공고제 131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지정자금 운용요강중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 운용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6. 5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 운용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제 1 항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리 년리 12%

제 8 조제 2 항제 1 호중 년리 8 %를 ·년리 10 %·로 하고 동항 제 2 호중 ·년리 12 %·를 ·년리 13.5 %·로 한다.

부 칙

1. 본 개정금리는 1975.4.20 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32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 집 행 요 령 중 개 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 집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6.5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재정자금 집행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항가호(2)중 ·10%·를 ·12%·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75.4.20 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33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금운용요강중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업자금운용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6. 5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업자금운용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제 1 항제 2 호중 "년 9 %"를 년 10 %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75. 4.20 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3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58 호 (74.5.7)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학교)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제 85 조제 1 항및 동법 제 46 조제 3 항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6.9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집행지 : 서울특별시관악구 사당동 199-1 외 6 필지
2. 사업명 : 도시계획사업 (학교)
3. 시행면적 : 3,713평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기간 : 74.9.9 - 74.12.30
6. 준공도면 : 준공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136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 대체지정공고

당시에서 지정한 수출품생산지정업체중 회사명이 변경된 다음업체를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지정및 자금지원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정공고한다

1975.6. .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지정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수출품
지정취소	1014	동광섬유공업(주)	고윤석	도봉구미아동 317-1	피 복
대체지정	1014	알파실업주식회사	고윤석	도봉구미아동 317-1	피 복

◎서울특별시공고제137호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정지

(잠정) 공 고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를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정지함을 공고한다. .

1975.5. .

서 울 특 별 시 장

1. 통행료의징수자 : 서울특별시장
1. 도 로 명 : 북악스카이웨이.
1. 징수정지 (잠정) 구간 :
   자. 서대문구 부암동 257-8
   지. 성북구정능동 109-34
1. 징수정지 (잠정) 일시 :
   1975.5.11.0시부터
1. 징수정지대상

차 종 별	요 금
승 용 차	50
버 스	50

◎서울특별시공고제 139 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3 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6.10

서 울 특 별 시 장

업 체 명	대 표 자	허가번호	소 재 지	취 소 사 유
광진성업 (주)	지 정 기	1-7- 39	영등포구당산동3가 475	법정기간내 형식승인 미신청

사 령

◎ 1975.5.23

중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김종협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 1975.5.27.

용산구보건소 지방의무기술서기보 오세연

지방의무기술서기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 1975. 6. 1

성북구보건소 지방의무기정서기보 조정서

지방의무기정서기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북구 보건소장에 보함.

관악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시보 이영성

지방보건기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관악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시보 김행호

지방보건기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도봉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 1975. 6. 6

국악관현악단 지방행정주사 채보석

지방공무원법제66조제1항 2의 규정에 의거 그직을 면함.

문화공보실 지방행정주사 이강수

국악관현악단근무를 명함.

◎ 1975. 6. 9

보건사회국 보건행정과 서기관 박수복

기획관리관실 예산담당관에 보함.

시설관리과 서기관 최상근

보건사회국 보건행정과장에 보함.

지하철본부 지방서기관 김영근

건설국시설관리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서기관 원지연

지하철본부 운수과장에 보함.

구획정리1과(환지1계장) 지방토목기좌 유봉환

지방토목기정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구획정리1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구획정리2과장 토목기정 정석헌
수도국 시설과장에 보함

구획정리1과장 토목기정 김교준
도시계획국 구획정리2과장에
보함.

기획관리관실 예산담당관 서기관 김정창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75. 6. 9

대 통 령

◎ 1975. 6.10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이원종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에 보함.

◎ 1975. 6.12

중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 김경세
지방공무원법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개량2과 지방토목기사 이원식
마포구근무를 명함.

수원과 지방토목기사 이주용
도봉구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토목기사 조정구
성북구근무를 명함.

구획정리2과 지방토목기사 황석문
구획정리1과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토목기사 김명기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토목기사 조명환
성북구근무를 명함.

도로보수과 지방토목기사보 이화현
성동구근무를 명함.

도시계획과 지방토목기사보 이제철
구획정리1과근무를 명함.

도시계획과 지방토목기사보 유지봉
구획정리2과근무를 명함.

구획정리1과 지방토목기사보 심재영
도시계획과근무를 명함.

구획정리2과 지방토목기사보 윤대길
도시계획과근무를 명함.

구획정리1과 지방토목기사보 전용봉
개량2과근무를 명함.

개량2과 지방토목기사보 이수현
구획정리1과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토목기사보 김양경
구획정리2과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토목기사보 한걸숙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토목기사보 이백
마포구근무를 명함.

마 포 구 지방토목기원 이 한 욱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토목기원 안 상 명
마포구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토목기원 김 혜 양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토목기원 지 영 배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구획정리1과 지방토목기원 진 석 우
동부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

관 악 구 지방토목기원 강 대 석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토목기원보 남 궁 근
관악구근무를 명함.

마 포 구 지방토목기사 김 주 환
도시계획과파견근무를 명함.
(75.6.12 ~ 75.12.11까지)

성 동 구 지방토목기사 남 제 환
시설과파견근무를 명함.
(75.6.12 ~ 75.12.11까지)

구획정리1과 지방토목기원 김 무 현
도로시설과파견근무를 명함.
(75.6.12 ~ 75.12.11까지)

영 등 포 구 지방토목기원 김 학 건
공원과파견근무를 명함.
(75.6.12 ~ 75.12.11까지)

중로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홍 재 창
성동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 황 인 섭
보건예방과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지방약무기사 강 서 철
의약과근무를 명함.

중 부 병 원 지방약무기사 서 태 영
성북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약무기원 김 진 수
중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중구보건소 지방약무기원 김 윤 열
성동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동대문구보건소 지방수의사보 김 명 호
어린이대공원근무를 명함.

어린이대공원 지방수의사보 이 영 우
동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상 정 과 지방행정주사보 염 봉 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신 동 휘
보건행정과파견근무를 명함.
(75.6.12 ~ 75.9.11까지)

토목시험소 지방과공 기사보시보 박 남 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5. 6.16

경 리 과 지방행정 사 무 관 손 상 은
감사담당관 감사 4 계장에 보함.

감사담당관 지방행정 사 무 관 윤 일 섭
인사과보임 1 계장에 보함.

업 무 과 지방행정 사 무 관 박 종 심
세정과세정계장에 보함.

사 회 과 지방행정 사 무 관 한 동 석
시설관리과시설관리계장에 보함.

시설관리과 지방행정 사 무 관 박 종 철
사회과사회계장에 보함.

인 사 과 지방행정 사 무 관 조 남 호
업무과서무계장에 보함.

순찰담당관 지방행정 사 무 관 신 중 시
경리과경리계장에 보함.

세 정 과 지방행정 사 무 관 강 덕 기
공무원교육원교수부근무를 명함.

박 영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이 성 인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윤 옥 례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윤 복 향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이 [illegible] 자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유 명 숙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이 은 경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정 기 성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남부병원근무를 명함.

박 수 영
지방토목기원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마포구근무를 명함.

영동출장소 지방건축기사보 황 인 무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영동출장소 지방건축기사보 김 철 만
성동구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건축기사보 정 한 주
영동출장소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건축기사보 이 희 재
관악구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건축기사보 엄 기 철
영동출장소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건축기사보 차 국 섭
관악구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건축기원 박 종 문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도 봉 구 지방건축기원 이 무 웅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관 악 구 지방건축기원 신 용 구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건축기원보 설 진 섭
영동출장소근무를 명함.

영동출장소 지방건축기원보 오 양 근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영 등 포 구 지방지적기사 안 종 두
도봉구근무를 명함.

도 봉 구 지방지적기사 신 용 길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지적기사보 조 규 은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지적기사보 이 영 길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개 량 2 과 지방지적기사보 김 연 재
구획정리2과근무를 명함.

구획정리2과 지방지적기원보 장 점 섭
개량2과근무를 명함.

관 재 과 지방지적기원 박 종 구
중구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지적기원 고 만 기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지적기원보 김 상 기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영 등 포 구 지방지적기원 권 풍 식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적기원 장 하 섭
성동구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지적기원 이원제
양서출장소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농림기사보 유지일
관악구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지방농림기원 이주완
어린이대공원근무를 명함.

어린이대공원 지방농림기원 이수길
천호출장소근무를 명함.

구의수원지 지방화공기원 이윤용
묵도수원지근무를 명함.

방호담당관 지방통신원보 김욱랑
시민과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지방기계기사보 이근호
영동출장소파견근무를 명함.
(75.6.16 ~ 75.9.15까지)

남부병원 지방보건(X-레이)기원보 김명균
중부병원파견근무를 명함.
(75.6.16 ~ 75.9.15까지)

◎ 1975. 6.17

도시계획과 지방토목기사보 심재영
계량2과파견근무를 명함.
(75.6.17~75.9.16까지)

구획정리1과 지방토목기원 이재호
도시계획과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행정주사보 최종문
총무과파견근무를 명함.
(75.6.20~75.9.19까지)

서 울 특 별 시 장